

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0. 3.

국무위원 조명래
(환경부장관)

1. 개정이유

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“한국물기술인증원”(‘19.11)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업무를 수행토록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개인하수도 성능 및 재질검사 인증 기관 변경(안 제56조)

- 개인하수도 성능 및 재질검사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당초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제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6조(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) 법 제52조 제4항 후단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 기관(이하 "검사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

1. 성능검사: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
2. 재질검사: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에 따른 시험·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

별지 제33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성능검사: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

별지 제34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“성능검사기관: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, 「수도법」에 따른 한국상하수도 협회”를 “성능검사기관: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)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 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(이하 "검사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성능검사 :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, 「수도법」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. 재질검사 :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에 따른 시험·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[별지 제33호서식] 중 유의사항란 가. 성능검사: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, 「수도법」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[별지 제34호서식] 중 유의사항란 성능검사기관: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, 「수도법」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	제56조(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) 법 제52조 제4항 후단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 기관(이하 "검사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 1. 성능검사: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2. 재질검사: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에 따른 시험·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[별지 제33호서식] 중 유의사항란 가. 성능검사: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[별지 제33호서식] 중 유의사항란 성능검사기관: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생활하수과	
연 락 처	(044) 201-7021